



중앙방역대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배포 및 후속조치 요청

1. 관련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3조
-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555호(2023.1.26.)
- 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2023.3.15.)

2. 안정적 방역상황 유지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 내용 정비) 의무 조정사항 관련 FAQ 등 정비

나. 시행: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

3. 아울러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소관 의무 유지시설을 지도·점검하여 주시고,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시설 등의 착용 권고상황도 지속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FAQ. 끝.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수신자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혁신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검찰총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병무청장, 농촌진흥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상청장, 방위사업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새만금개발청장, 문화재청장, 해양경찰청장, 특허청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서울특별시장(감염병관리과장), 부산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 대구광역시장(사회재난과장), 광주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대전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인천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울산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감염병관리과장), 강원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기도지사(질병정책과장), 경기도지사(사회재난과장), 충청북도지사(사회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주무관 신승 행정사무관 김혜원 일상방역관리팀장 곡진 방역지원단장 전결 2023. 3. 15. 홍정익

협조자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4174 접수 학생건강정책과-1660 (2023. 3. 16.)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 <http://www.kdca.go.kr>

전화번호 043-719-9065 팩스번호 00-000-0000 / clavicle@korea.kr / 대국민 공개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